



제429회국회(정기회)
제1차 국방위원회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군인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 명문화〉

■ 추미애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0121호)

2025. 9.

국 방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송수환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추미애의원 등 14인
2. 발의연월일 : 2025. 4. 25.
3. 회부연월일 : 2025. 4. 28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병영생활에서의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.

그런데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,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특히,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.

이에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여 군인들이 안전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4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4 신설).

[신·구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<신 설>	제17조의4(안전권의 보장)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2024년 12월 19일, 충북 충주의 제19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K-311 군용 수송트럭 사고로 병사 2명이 사망하고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.

이는 차량 화물칸에 탑승한 인원이 안전장비 없이 튕겨져 나가면서 발생한 것으로, 군 수송장비의 구조적 안전 확보 미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.

- 현행 「국방 안전 훈령」¹⁾에서는 국방인력에 대한 안전에 관한

1) 「국방 안전 훈령」 제1조 (목적)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15조 (위험관리의 원칙)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관리의 절차를 정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

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, 공군 규정에서는 병력 수송 시 안전벨트 착용 및 안전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.

「공군규정 5-36 차량운행 및 관리」

제10조 (인원수송) ③ 모든 탑승인원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.

④ 표준차량은 ~ 안전대책(안전벨트 장착 등) 준수하 적재함에 병력 탑승할 수 있으며, ~ **운행감독관이** 탑승자에게 직접 **안전교육을 실시**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운행감독 활동) ④ 운행감독관은 다음 각 호를 확인 및 감독하고 ~

1. 제반 교통법규 및 관련 규정의 이행 사항

자료: 국방부

□ 다만, 이들 훈령 및 규정은 행정규칙으로서 내부 지침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에, 실제 사고 발생 시 법원에서 안전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.

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위험관리 절차는 유해·위험요인의 예측 및 파악, 위험성평가, 위험성결정,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, 위험성 개선 등을 포함한다.

제16조 (작전 상황 하 위험관리) 평시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은 전·평시 작전 상황 하의 국방 안전과 연계되어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은 임무필수과업목록 수립 등 작전 시 안전 관리를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9조 (안전보건조치)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기계·기구, 장비,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
 2. 폭발성,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
 3. 전기, 열,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
 4. 추락, 붕괴 등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
-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작업상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과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사업을 위해 국방인력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국방인력의 안전사고, 작업상 건강장해 예방 및 후속조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협약체결 시 반영하여야 한다.

제21조 (안전점검) ① 각급 기관은 연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상급 부대·기관에 안전점검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안전점검의 종류와 내용은 [별표 9]와 같으며, 각급 기관의 장은 관계 규정 및 안전지침서를 참조하여 부대 임무, 기타 지역적 조건에 적합한 안전점검표 등 안전점검 참고자료를 작성·운영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등의 실적은 안전관리담당관이 작성·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.
- ④ 국방부장관은 각급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방부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국방부 합동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.

-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,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국가의 법적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존 훈령 및 규정
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실질적인 군 안전 확보 조치의
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 및 내용은
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.
- 국방부는 병영생활 중 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더욱 보장
할 수 있다는 점, 국가의 법적 책임 명시가 유관기관의 안전 확보
노력과 책임 이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에
동의한다는 입장임.
- 참고로, 동 사안과 관련하여 추미애의원이 발의한 「군수품관리
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10120호)가 국방위원회에 회
부되었으며, 국민청원도 접수²⁾되어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
회에 회부된 상태임.

2) 청원번호 제2200080호, 「군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법제화 등에
관한 청원」, 정**외 50,008명